

[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
- 단체명(안)

2018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 목 차 -

1. 머리말	1
1.1. 배경 및 목적	1
1.2. 범위	2
1.3. 용어 정의	2
1.4. 관련 표준	3
2. 단체명 채택표목	5
2.1. 정보원의 우선순위	5
2.2. 채택표목의 선정과 기술	5
3. 단체명 참조표목	34
3.1. 「~보라」 참조표목	34
3.2. 「~도 보라」 참조표목	35
4. 단체의 속성	37
4.1. 원칙	37
4.2. 단체와 관련된 날짜	37
4.3. 단체의 유형	38
4.4. 관련 장소	38
4.5. 단체의 주소	39
4.6. 활동분야	40
4.7. 언어	41
4.8. 단체의 역사	41
5. 정보원의 기술	43
6. [참고] 선거데이터 예시	44

1. 머리말

1.1. 배경 및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 목록규칙(이하 KCR) 4판에 의거하여 목록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KCR 4판은 표목 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았고,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선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통일표목의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한 규칙이다.

2003년 KCR 4판이 발행된 후 현재까지 국가 표준으로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목록규칙은 1966년 발행된 KCR 2판이 유일한데, 이 규칙은 발행된 지 40년이 지난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9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선거통제용」을 제정(2016년 개정)한 이후 선거데이터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선거데이터를 위한 국가 표준 규칙이 없기 때문에 KCR4판이 개정될 때까지 선거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 기술하고자 개인명과 단체명을 위한 기술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2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 2013년 2월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단체명」을 수립하였으며, 국제적 선거 동향 및 도서관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단체명」을 개정하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단체명」은 「국제목록원칙」, 「선거데이터의 기능 요건」(이하 FRAD), 「자원의 기술과 접근」(이하 RDA),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를 참조하여 개발되었고, 단체명

선거데이터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규칙, 즉 단체의 채택표목과 참조표목의 선정과 기술, 그리고 단체의 식별을 위한 속성의 기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에 따라 구축된 단체명 선거데이터는 서지데이터와 연계되어 도서관 목록이 자료의 검색과 집중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1.2. 범위

단체명 선거데이터 구축 대상은 저작에 책임표시로서 나타나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단, 도서관 정책에 따라 주기 사항에 기재된 단체명을 부출(분출)할 경우에는 선거데이터를 작성한다. 선거데이터 구축 대상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 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그러나 회의명(단체로서 취급되는 회의 및 단체의 내부 회의 포함)은 단체명으로 다루지 않고, 정부기관명 등으로 사용된 지역명은 단체명으로 일부 다루었다.



이 지침에서 사용된 예시는 선거데이터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당 조항에만 적용되며, 실제 저작과 기타정보원에 나타난 이름 형식에 따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 또한 예시의 작성을 위해 사용된 목록형식은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선거통제용」으로 도서관 정책에 따라 목록형식이 바뀔 경우 바뀐 형식을 사용하여 선거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용어정의

- 단체(corporate bodies) : 특정 이름으로 식별되고 하나의 단위로 행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의 집합. 단체의 전형적인 예로 협회나 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정부, 정부기관, 특정 사업과 프로그램, 종교단체 등이 있다(출처: RDA).
- 속성(attributes) : 단체를 다른 단체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체의

특성으로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한 속성과 변경되지 않는 속성을 모두 포함한다.

- 저작(著作, works) :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한 지적, 예술적 창조의 결과로서, 문자나 기호, 도형 등으로 표현되거나 기록되어 구체화된 것. 표제를 가짐으로써 하나의 실체로 취급된다(출처: KCR 4판).
- 전거(典據, authority) : 저록에 사용된 서지 개체의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관련 자료를 목록 상에서 집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전통적으로 특정 형식의 접근점(표목)을 대표 형식으로 규정하고, 이와 다른 형식의 접근점을 이 대표 형식과 연결하는 방식(출처: 문헌정보학용어사전)
- 전거데이터(authority data) : 특정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저작물, 또는 동일 저작의 여러 판을 집중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제어된 접근점과 기타 정보를 표현한 것으로 제어된 접근점에는 하나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목록작성자가 확보한 이름의 전거형식과 그 이형이 포함된다(출처: FRAD).
-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 : 전거데이터에 기술되는 개체(개인, 단체, 서명 등)의 이름, 속성, 관계 등의 출처
- 채택표목 : 이 지침에 따라 선정된 단체의 대표 형식 이름을 접근점으로 한 표목
- 참조표목 : 단체의 채택표목 외의 다른 형식의 이름을 접근점으로 한 표목

1.4. 관련 표준

- 기술규칙

- 국제목록원칙(ICP), 2009.
 - 전자데이터의 기능 요건(FRAD), 2009.
 -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 2010.
 - 한국목록규칙 2판(KCR2), 1966.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단체명 표목의 선택·형식기준, 2012. 1.
- 목록형식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자통제용(KS X 6006-4) 개정판, 2016.
 -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1999. ed.), Update 2012. 4.
- 기타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2014. 3. 24.
 -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 1. 7.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 고시 제2014-42호, 2014. 12. 5.
 -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

2. 단체명 채택표목

2.1. 정보원의 우선순위

다음 정보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채택표목을 선정한다.

- ① 단체와 관련된 저작¹⁾의 으뜸정보원
- ② 단체와 관련된 저작에서 나타나는 기타 공식 기재사항
- ③ 기타 정보원(참고도서, 인터넷정보원 등)

2.2. 채택표목의 선정과 기술

가. 선정원칙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서 해당 단체와 관련된 저작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²⁾ 선정된 단체명은 머리글자(두문자), 약어일 수 있다. 단체와 관련된 저작에 단체명이 나타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기타 정보원(참고자료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한 단체명이 다수로 존재하거나 표목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의 단체는 지역명을 외국의 단체는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한다. 외국 단체가 정부기관(행정, 입법, 사법기관)인 경우에도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한다.

나. 채택표목의 기술

단체명의 맞춤법, 두문자법 등은 표기 형식의 언어 관습에 따른다. 또한 단체명에 포함된 강세와 기타 음성 구분기호, 이름 사이에 있는 붙임표는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한다. 단체명 로마자의 대문자 표기 방식은 일반적인 대문자 사용 규칙³⁾을 따른다.

1) 이 지침에서 저작(著作)은 KCR 4판에서 사용된 의미와 동일하며, FRBR의 저작(work)보다는 구현형(manifestation)을 말한다.

2) 국제목록원칙에서는 ‘6.3.3.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름보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나 관용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름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체명의 앞이나 뒤에 있는 단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다음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한다.

- 법인이나 법인의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예: 주식회사, 사단법인, 도서출판, Ltd., Inc. 등)

다만 위 용어가 이름의 주된 부분이거나 그 이름이 해당 법인의 이름임을 분명히 나타내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기술한다.

단체명에 머리글자가 있는 경우, 다음에 오는 온점과 그 뒤에 나오는 머리글자나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머리글자 사이에 온점 등이 없으면 문자는 공백 없이 붙여서 기술한다.

다. 널리 알려진 이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1) 단체명이 서로 다른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단체의 널리 알려진 이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 단체와 관련된 저작에서 단체명이 서로 다른 언어(문자) 형식으로 사용 빈도가 비슷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표목을 선정한다.

- ① 한자문화권인 한·중·일(원어, 한자 등)의 경우, 한글 표기 형식을 채택하고, 기타 지역(로마자, 비로마자)의 경우 로마자 표기 형식을 채택
- ②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 중에 한글·로마자가 없는 경우, 단체의 공식 언어 형식을 채택
- ③ 한글·로마자 형식과 단체의 공식 언어 형식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처음 입수된 저작에 나타난 언어 형식을 채택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3) 일반적인 대문자 표기 규칙에 따르면 ①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 ② 두문자어(축약어)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③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기술한다.

【 한자문화권인 한·중·일(원어, 한자 등)의 경우 】

한국 단체명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 중에 한글 표기를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단 한글과 외국어 표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저작에 나타난 형식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하고, 한글형을 참조 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한국거래소
	410	▼aKRX
	410	▼aKorea Exchange
	410	▼a韓國去來所
	110	▼a넥서스books
	410	▼a넥서스북스
	410	▼aNexus Books

중국, 일본의 단체명은 한자의 한글음을 채택한다. 일본 단체명에 사용된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는 한역(韓譯, 번역한 한글)한 형식을 채택한다.

예)	110	▼a중국국가도서관
	410	▼a中国国家图书馆
	410	▼aNational Library of China
	110	▼a일본세라믹협회
	410	▼a니혼세라믹쿠스쿄카이
	410	▼aCeramic Society of Japan
	410	▼a日本セラミックス協会
	110	▼a일본배구협회
	410	▼a니혼바레보루쿄카이
	410	▼aJapan Volleyball Association
	410	▼a日本バレーボール協会

단체명에서 고유명(인명, 지명)이 포함된 경우 인명은 개인명 전거 데이터 작성 지침을, 지명은 주제명표목표(지명)를 참고하여 기술한다.

예)	110	▼a타이베이시립미술관
	410	▼a대북시립미술관
	410	▼a臺北市立美術館
	110	▼a베이징대학교
	410	▼a북경대학교
	410	▼a北京大學校
	110	▼a시바 료타로 기념재단
	410	▼a사마료태랑기념재단
	410	▼a司馬遼太郎記念財団



【 기타 지역(로마자⁴), 비로마자⁵)의 경우 】

기타 지역(로마자, 비로마자)의 단체명은 로마자 표기를 채택한다.

예)	110	▼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410	▼aALA
	410	▼a미국도서관협회
	110	▼a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410	▼aNational Library of France
	410	▼a프랑스국립도서관
	110	▼aNational Library of Greece
	410	▼aΕθνική Βιβλιοθήκη της Ελλάδος
	410	▼a그리스국립도서관

4)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5) 그리스문자, 데바나가리문자(힌디어), 아랍문자, 키릴문자(러시아어 등), 티베트문자, 히브리문자 등

기타 지역(로마자, 비로마자) 단체의 공식 언어가 둘 이상인 경우, 영어 형식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예)	110 ▼aCanadian Committee on Cataloguing
	410 ▼aComité Canadien de Catalogage
	※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인 경우

【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 중에 한글·로마자가 없는 경우 】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 중에 한글 및 로마자 표기가 없는 경우, 단체의 공식 언어 형식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 한글·로마자 형식과 단체의 공식 언어 형식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

한글 및 로마자 형식과 단체의 공식 언어 형식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첫 번째로 입수된 저작에 나타난 형식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예)	110 ▼aแนวงานรวมมือ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110 ▼aVăn Hóa Thông Tin
	※ 로마자 표기를 알 수 없어 첫 번째로 입수된 저작에 나타난 태국어와 베트남어 형식을 채택한 경우

2) 축약형 단체명이 있는 경우

단체의 널리 알려진 이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축약형과 완전형이 있는 경우 완전형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예)	110 ▼a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10 ▼a민주노총
	410 ▼a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410 ▼a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둘 이상의 단체가 동일한 축약형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식별을 위

해 구분이 필요한 경우 더 완전한 형식이나 공식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예)	110	▼aWorld Tourism Organization
	410	▼aWTO
	410	▼a세계관광기구
	※ WTO라는 축약형으로 널리 알려진 다른 단체명이 존재할 경우. ex. 세계무역기구(WTO)	

라. 하위단체를 포함하는 단체인 경우⁶⁾

1) 단체명이 상위단체명과 함께 주로 쓰이는 경우

단체명이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상위단체명과 함께 주로 쓰이는 경우, 상위단체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하위단체명은 채택표목의 하위요소로 기술한다.⁷⁾

- ① 다른 단체의 일부분임을 나타내는 용어를 포함하는 단체명(하위부서)
(예: 부, 실, 국, 과, 팀, 지부, department, division, section, branch, team, office 등)

예)	110	▼a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b연구기획조정본부
	410	▼a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
	110	▼a한국연극협회.▼b대전광역시지회
	410	▼a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
	110	▼aIFLA.▼bClassification and Indexing Section
	410	▼aIFLA Classification and Indexing Section
	410	▼a국제도서관연맹.▼b분류색인분과

6) FRAD에서 제시한 ‘5.3.6 단체간의 관계’ 규정에서 계층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FRAD에 따르면 이 관계는 전거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전거형식의 이름이 지닌 계층구조를 통하거나 보라 참조 등을 통하여 표현된다.

7) 국제목록원칙 ‘6.3.4.3. 단체명의 형식’ 규정에서 단체명이 종속관계이거나 종속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경우, 또는 종속단체를 식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전거형 접근점은 상위단체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 출판사 편집부⁸⁾의 경우 출판사명을 채택표목으로 기술한다. 그 외 출판사의 하위부서를 나타내는 용어를 포함하는 경우, 상위단체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하위단체명은 채택표목의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한편 출판사 임프린트의 경우 별도의 개체로 취급하여 신규로 생성한다.

예)	110	▼a문학동네
	410	▼a문학동네 편집부
	110	▼a시스컴.▼b검정고시연구회
	410	▼a시스컴 검정고시연구회
	110	▼a북노마드
	410	▼a북노마드 편집부
	※ 북노마드는 문학동네의 임프린트임	



② 상위단체명을 포함하는 단체명(부속기관)

예)	110	▼a한양대학교.▼b산학협력단
	410	▼a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10	▼a서울대학교.▼b박물관
	410	▼a서울대학교 박물관
	410	▼aSeoul National University.▼bMuseum
	110	▼aYale University.▼bLibrary
	410	▼aYale University Library
	410	▼a예일대학교.▼b도서관

③ 식별을 위해 상위단체명이 필요한 단체명

8) 이 지침에서 출판사의 ‘편집부’는 하위단체명 개념이 아닌 출판사명에 포함되는 의미로 간주한다.

예)	110	▼a서울대학교.▼b아시아연구소
	410	▼a아시아연구소
	110	▼a경북대학교.▼b아시아연구소
	410	▼a아시아연구소
	110	▼a성공회대학교.▼b동아시아연구소
	410	▼a동아시아연구소
	110	▼a충주대학교.▼b동아시아연구소
	410	▼a동아시아연구소

2) 하위단체명이 중간조직과 최하위 조직으로 구분되는 경우

- ① 식별을 위해 중간조직이 필요한 경우
 하위요소로 기술되는 하위단체명이 조직구조상 중간 조직과 최하위 조직으로 구분되는 경우,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조직과 최하위 조직을 모두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예)	110	▼a한국은행.▼b대전충남본부.▼b기획조사팀
	410	▼a한국은행.▼b기획조사팀
	110	▼a한국은행.▼b충북본부.▼b기획조사팀
	410	▼a한국은행.▼b기획조사팀

- ② 식별을 위해 중간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 조직은 생략하고 최하위 조직만 채택표목의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예)	110	▼a국립중앙도서관.▼b국가서지과
	410	▼a국립중앙도서관.▼b자료관리부.▼b국가서지과

110	▼a국립공원관리공단.▼b경영기획부
410	▼a국립공원관리공단.▼b기획재정처.▼b경영기획부

마. 이름이 변경된 단체인 경우9)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단체명과 변경 후 단체명을 각각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변경 전 단체명과 변경 후 단체명 간의 관계는 「~도 보라」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046	▼s1962▼t2009
	110	▼a대한주택공사
	510	▼wb▼a한국토지주택공사
	046	▼s1996▼t2009
	110	▼a한국토지공사
	510	▼wb▼a한국토지주택공사
	046	▼s2010
	110	▼a한국토지주택공사
	510	▼wnnnd▼a한국토지공사
	510	▼wnnnd▼a대한주택공사
	665	▼a2010년 9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
	046	▼s1988▼t2002
	110	▼a한국담배인삼공사
	510	▼wnnnd ¹⁰⁾ ▼aKT&G
	510	▼wnnnd▼a한국인삼공사
	665	▼a1999년 한국인삼공사 계열 분리,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KT&G로 명칭 변경.

9) FRAD에서 제시한 ‘5.3.6 단체간의 관계’ 규정에서 연속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FRAD에서는 연속관계를 순서나 시대 순에서 앞선 단체에 이어 출현한 복수의 단체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예로써 이전단체/후속단체, 분할, 합병, 후속회합/회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FRAD에 따르면 연속관계는 전거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름을 연결한 도보라 참조 등을 통하여 표현된다.

	046 ▼s1999
	110 ▼a한국인삼공사
	510 ▼wa▼a한국담배인삼공사
	046 ▼s2002
	110 ▼aKT&G
참고	510 ▼wa▼a한국담배인삼공사
	▼wnnd : 상호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연혁참조(665 ▼a) 필드를 사용함 (ex. 단체의 합병 또는 분리 시)
	▼wa : 이전 표목
	▼wb : 이후 표목

바. 정부기관¹¹⁾

정부기관은 행정, 입법, 사법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기관명은 공식명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명¹²⁾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공식명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한국	
	410 ▼a대한민국	
	410 ▼aRepublic of Korea	
	410 ▼aKorea	
	※ 한국은 관용명, 대한민국은 공식명	
	110 ▼aFrance	
	410 ▼a프랑스	
	410 ▼aRépublique française	
	※ France는 관용명, République française는 공식명	
	110 ▼aUnited States	

11) 정부(政府) :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2) 정부기관의 관용명은 주로 해당 정부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명이다.

	410 ▼a미합중국
	410 ▼aUnited States of America
	※ United State는 관용명, United States of America는 공식명

표목의 기본요소로 기술된 정부기관의 식별을 위해 국명이나 지역명을 한정어로 부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기관은 동일한 기관명을 사용하는 기관이 다수로 존재하거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위 지역 단위의 지역명을 한정어로 기술한다. 단, 상위 지역 단위가 국명인 경우는 기술하지 않는다.

	110 ▼a광주광역시
예)	410 ▼a광주
	410 ▼a光州
	410 ▼aGwangju
	410 ▼a광주광역시청
	110 ▼a광주시 (경기도)
	410 ▼a廣州 (경기도)
	410 ▼a광주 (경기도)
	410 ▼aGwangju (경기도)
	410 ▼a광주시청

외국 정부기관은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한다.

	110 ▼aOhio (미국)
예)	410 ▼a오하이오 (미국)
	110 ▼a오사카 (일본)
	410 ▼a大阪 (일본)
	110 ▼aF.B.I (미국)

410	▼a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410	▼aUnited States. ▼bMinistry of Justice. ▼b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410	▼a미국 연방수사국

1)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말하며, 국가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¹³⁾을 말한다(예: 문화체육관광부).

중앙행정기관은 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기관명은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예)	110	▼a한국.▼b문화체육관광부
	410	▼a문화체육관광부
	410	▼aKorea.▼b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mall>National Library of Korea</small>
	110	▼a한국.▼b식품의약품안전처
	410	▼a식품의약품안전처
	410	▼aKorea.▼b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10	▼a한국.▼b경찰청
	410	▼a경찰청
	410	▼aKorea.▼b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10	▼a한국.▼b대통령비서실
	410	▼a대통령비서실
	410	▼aKorea.▼bPresidential Secretariat
	110	▼a한국.▼b국무조정실

13)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범주에서 제외한다.(예: 국립중앙도서관)

	410 ▼a국무조정실
	410 ▼aKorea.▼b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110 ▼a한국.▼b공정거래위원회
	410 ▼a공정거래위원회
	410 ▼a대한민국.▼b공정거래위원회
	410 ▼aKorea.▼bFair Trade Commission
	110 ▼aUnited States.▼bDepartment of State
	410 ▼aDepartment of State (미국)
	410 ▼a미국.▼b국무부
	※ 참조표목인 ‘국무부’는 외국 단체이므로 국명을 한정어로 기술한다.
	110 ▼aUnited States.▼bCommission on Online Child Protection
	410 ▼aCommission on Online Child Protection (미국)
	410 ▼a미국.▼b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거나 최상위 기관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해당 기관명을 그대로 채택표목으로 기술한다.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명 뒤에 지역명을 한정어로 부기할 수 있다.

예)	110 ▼a국립중앙도서관
	410 ▼a한국.▼b문화체육관광부.▼b국립중앙도서관
	410 ▼aNational Library of Korea
	110 ▼a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10 ▼a한국.▼b식품의약품안전처.▼b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10 ▼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110	▼a국립식량과학원
410	▼a한국.▼b농촌진흥청.▼b국립식량과학원
410	▼a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110	▼a광주지방검찰청
410	▼a한국.▼b지방검찰청 (광주)
410	▼a한국.▼b광주지방검찰청
110	▼a대전지방국토관리청
410	▼a한국.▼b국토교통부.▼b지방국토관리청 (대전)
410	▼a한국.▼a대전지방국토관리청
110	▼a서울특별시교육청
410	▼a한국.▼b교육부.▼b교육청 (서울)
410	▼a한국.▼a서울시교육청
410	▼a서울시교육청

외국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을 그대로 채택표목으로 기술하고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한다. 단, 표목에 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정어를 부기하지 않는다.

예)	110	▼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미국)
	410	▼a미국.▼a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10	▼aUnited States. ▼b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110	▼aFood Science Institute (미국)
	410	▼a미국.▼a식량과학원
	410	▼aUnited States.▼bFood Science Institute

2) 국가원수, 정부수반 등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원수, 정부수반 등 통치자의 칭호는 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기술하고 해당 칭호를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단, 중앙행정기관장의 칭호는 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기술하고 소속기관과 해당 칭호를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채택표목에 특정 통치자를 기술하는 경우, 통치자의 칭호 뒤에 통치기간과 이름을 해당 통치자의 개인명 채택표목과 일치하는 언어로 기술한다.

개인이 정부기관의 통치자로서 단체명 선거데이터의 채택표목으로 기술되고¹⁴⁾, 식별된 개인의 정체성으로서 개인명 선거데이터의 채택표목으로도 작성되었다면, 「~도 보라」 참조표목으로 서로의 관계를 기술한다.

예)	110	▼a한국.▼b대통령 (1998-2003 : 김대중)
	410	▼aKorea.▼bPresident (1998-2003 : 김대중)
	5001	▼a김대중,▼d1925-2009
		※ 국가원수로서 김대중의 단체명 선거데이터
	1001	▼a김대중,▼d1925-2009
	510	▼a한국.▼b대통령 (1998-2003 : 김대중)
		※ 식별된 개인으로서 김대중의 개인명 선거데이터
	110	▼aGreat Britain.▼bPrime Minister (1951-1955 : Churchill, Winston)
	410	▼a영국.▼b총리 (1951-1955 : Churchill, Winston)
	5001	▼aChurchill, Winston,▼d1874-1965
		※ 국가원수로서 Churchill의 단체명 선거데이터
	1001	▼aChurchill, Winston,▼d1874-1965

14) 국가원수, 정부수반 등이 재임 기간 동안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한 자료의 경우 개인명이 아닌 단체명에 서지 연결을 함.

510	▼aGreat Britain.▼bPrime Minister (1951-1955 : <u>Churchill, Winston</u>) ※ 식별된 개인으로서 Churchill의 개인명 선거데이터
110	▼a한국.▼b문화체육관광부.▼b장관 (2017- : 도종환)
410	▼aKorea.▼b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Minister (2017- : 도종환)
5001	▼a도종환,▼d1955- ※ 장관으로서 도종환의 단체명 선거데이터
1001	▼a도종환,▼g都鍾煥,▼d1954-
510	▼a한국.▼b문화체육관광부.▼b장관 (2017- : 도종환) ※ 식별된 개인으로서 도종환의 개인명 선거데이터

동일한 통치자의 재임기간이 비연속적인 복수의 기간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택표목을 생성한다.

예)	110	▼aUnited States.▼bPresident (1885-1889 : Cleveland, Grover)
	410	▼a미국.▼b대통령 (1885-1889 : Cleveland, Grover)
	110	▼aUnited States.▼bPresident (1893-1897 : Cleveland, Grover)
	410	▼a미국.▼b대통령 (1893-1897 : Cleveland, Grover)
	110	▼aUnited States.▼bPresident(2009- : Obama, Barack)
	410	▼a미국.▼b대통령 (2009-2017: Obama, Barack) ※ 재임기간이 연속적인 경우

3) 대사관, 영사관 등

재외공관명은 설치하는 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대사

관, 공사관, 영사관 등 재외공관명은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하위요소로 기술되는 재외공관명에 국명은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대사관이나 공사관의 경우, 재외공관이 설치되는 국명을 하위요소 뒤에 한정어로 부기한다.

예)	110	▼a한국.▼b대사관 (미국)
	410	▼a대한민국.▼b대사관 (미국)
	410	▼aKorea.▼bEmbassy (미국)
	410	▼a주미한국대사관
	110	▼aUnited States.▼bEmbassy (한국)
	410	▼a미국.▼b대사관 (한국)
	410	▼a주한미국대사관
	110	▼a일본.▼b대사관 (한국)
	410	▼a日本.▼b大使館 (한국)
	410	▼a주한일본대사관
	110	▼aUnited States.▼bEmbassy (한국).▼bPublic Affairs Section
	410	▼a미국.▼b대사관 (한국).▼b공보과
	410	▼a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영사관이나 기타 지역 사무소의 경우, 재외공관이 설치되는 국명과 지역명을 하위요소 뒤에 한정어로 부기한다.

예)	110	▼a한국.▼b총영사관 (중국 광저우)
	410	▼a대한민국.▼b총영사관 (중국 광저우)
	410	▼a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410	▼a大韓民國.▼b總領事館 (중국 광저우)
	410	▼a大韓民國駐廣州總領事館

110	▼a한국.▼b출장소 (미국 댈러스)
410	▼a대한민국.▼b출장소 (미국 댈러스)
410	▼a주 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
410	▼aRepublic of Korea.▼bConsular Office (미국 댈러스)
410	▼aConsular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Dallas
110	▼a한국.▼b대표부 (스위스 제네바)
410	▼a대한민국.▼b대표부 (스위스 제네바)
410	▼a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410	▼a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Secretaria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4) 군대

군대는 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군대 이름은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하위요소로 기술된 군대의 하위 기관이나 지휘구역, 부대 이름은 군대 이름 아래에 최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예)	110	▼a한국.▼b육군
	410	▼a대한민국.▼b육군
	410	▼aKorea.▼bArmy
	110	▼aUnited States.▼bArmy.▼bCenter of Military History
	410	▼a미국 육군 군사연구소
	410	▼a미국.▼b육군.▼b군사연구소

5) 지방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한국의 지방행정기관 중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서 기술되는 행정단위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¹⁵⁾)이며 외국의 경우 이에 준하는 행정 단위로 한다.

한국, 일본, 중국의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행정단위명(예: 시(市), 구, 군, 도, 성(省), 현(縣) 등)을 지역명과 함께 채택표목으로 기술 한다.

한국의 지방행정기관은 관할지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관할지역명이 동일한 지방행정기관이 다수로 존재하거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위 지역 단위의 지역명을 한정어로 부기한다. 외국 지방행정기관은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한다.

예)	110	▼a부산광역시	
	410	▼a부산	
	410	▼a부산광역시청	
	410	▼aBusan	
	110	▼a종로구	
	410	▼a종로	
	410	▼a종로구청	
	410	▼aJongno-gu	
	110	▼a전라남도	
	410	▼a전라남도청	
	410	▼a전남	
	410	▼aChölla-namdo	
	<hr/>		
	110	▼a광주광역시	
	410	▼a광주	
	410	▼a光州	
	410	▼aGwangju	
	410	▼a광주광역시청	

15) 특별시, 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구(區)를 말한다.

110	▼a광주시 (경기도)
410	▼a廣州 (경기도)
410	▼a광주 (경기도)
410	▼aGwangju (경기도)
410	▼a광주시청
110	▼a베이징 (중국)
410	▼a北京 (중국)
110	▼a나라현 (일본)
410	▼a奈良縣 (일본)

지방행정기관장의 칭호는 관할지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해당 칭호를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예)	110	▼a서울특별시.▼b시장 (2014- : 박원순)
	410	▼aSeoul.▼bMayor (2014- : 박원순)
	5001	▼a박원순,▼d1956-

지방행정기관에 속한 하위 기관의 경우, 지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기관명은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예)	110	▼a경기도.▼b도시계획상임단
	410	▼a경기도 도시계획상임단
	410	▼a경기도.▼b도시주택실.▼b도시계획상임단
	110	▼a부산광역시.▼b환경보전과
	410	▼a부산 환경보전과
	410	▼a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110	▼a울산광역시.▼b소방본부
	410	▼a울산 소방본부

	110 ▼a울산광역시.▼b남부소방서
	410 ▼a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410 ▼a울산 남부소방서
	410 ▼a울산광역시.▼b소방본부.▼b남부소방서
	110 ▼a서울특별시.▼b시사편찬위원회
	410 ▼a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10 ▼a서울특별시.▼b의회.▼b재정경제위원회
	410 ▼a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410 ▼a서울특별시의회.▼b재정경제위원회
	110 ▼a울산광역시.▼b의회.▼b사무처
	410 ▼a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410 ▼a울산광역시의회.▼b사무처

지방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을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채택표목으로 기술하고, 상위기관명을 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해당기관명을 하위요소로 하여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광주시립민속박물관
	410 ▼a광주광역시.▼b시립민속박물관
	110 ▼a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410 ▼a강원도.▼b여성가족연구원
	110 ▼a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410 ▼a인천광역시교육청.▼b인천평생학습관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채택표목에서 행정단위명(예: city, county, state 등)은 모두 생략한다.¹⁶⁾

예)	110	▼aRome (이탈리아)
	410	▼a로마 (이탈리아)
	110	▼aManhattan (미국)
	410	▼a맨해튼 (미국)

6) 입법기관¹⁷⁾

입법기관은 **국회 또는 국가 수준의 의회**를 의미하며, 지방의회 등은 제외한다. 입법기관은 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입법기관명은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이 때 하위요소로 기술된 입법기관명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국회를 하위요소로 각각 기술하고, 위원회는 최하위 요소로 기술한다.

예)	110	▼a한국.▼b국회.▼b건설교통위원회
	410	▼a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국회 상임위원회
	110	▼a한국.▼b국회.▼b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410	▼a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국회 특별위원회

입법기관이 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을 입법기관의 채택표목의 최하위요소로 기술한다.

110	▼aUnited States.▼bCongress.▼bSenate
-----	-------------------------------------

16)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에서 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유형을 기술하는 필드는 368 Other Attributes of Person or Corporate Body이며 서브필드는 \$b Type of jurisdiction이다.

예) 151 2# \$aCork (Ireland : County)

368 ## \$bCounty

17) 입법기관(立法機關) :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원칙적으로 국회(國會)를 이르는 말이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예)	410	▼a미국.▼b의회.▼b상원
	110	▼aUnited States.▼bCongress.▼bHouse of Representatives
	410	▼a미국.▼b의회.▼b하원

입법기관의 소속기관은 정보원에 나타난 해당 기관명을 그대로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기술한다.

한국의 입법기관 또는 입법기관의 소속기관은 동일한 기관명을 가진 기관이 다수로 존재하거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명을 한정어로 부기할 수 있다.

외국 입법기관은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한다. 단, 표목에 국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한정어를 부기하지 않는다.

예)	110	▼a국회사무처.▼b법제실
	410	▼a한국.▼b국회.▼b사무처.▼b법제실
	110	▼a국회도서관
	410	▼a한국.▼b국회.▼b도서관
	110	▼a국회예산정책처.▼b경제분석실.▼b거시경제분석과
	410	▼a한국.▼b국회예산정책처.▼b경제분석실.▼b거시경제분석과
	110	▼aLibrary of Congress (미국)
	410	▼a미국의회도서관
	410	▼aUnited States.▼bLibrary of Congress

7) 사법기관

사법기관¹⁸⁾ 중 최상위기관은 국명을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18) 사법기관(司法機關) :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 좁은 의미로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만을

사법기관명은 하위요소로 기술한다.

예)	110	▼a한국.▼b대법원
	410	▼a대법원

최상위기관의 판단여부가 모호한 기관이거나 최상위기관의 소속 기관은 정보원에 나타난 해당 기관명을 그대로 채택표목으로 기술한다.

한국의 사법기관은 동일한 기관명을 가진 기관이 다수로 존재하거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명을 한정어로 부기할 수 있다.

예)	110	▼a서울고등법원
	410	▼a한국.▼b고등법원 (서울)
	110	▼a광주지방법원
	410	▼a한국.▼b지방법원 (광주)
	110	▼a대전가정법원
	410	▼a한국.▼b가정법원 (대전)

사법기관의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을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채택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사법연수원
	410	▼a한국.▼b대법원.▼b사법연수원
	110	▼a법원도서관
	410	▼a한국.▼b대법원.▼b법원도서관

외국 사법기관은 국명을 한정어로 부기한다. 단, 표목에 국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한정어를 부기하지 않는다.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사법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이른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사. 국제단체

국제단체는 한국어 이름이나 공식 언어로 된 이름이 채택표목으로 기술되지 않은 경우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World Vision
	410 ▼a월드비전
	110 ▼aOECD
	410 ▼a경제협력개발기구
	410 ▼a經濟協力開發機構
	410 ▼a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10 ▼aIFLA
	410 ▼a국제도서관협회연맹
	410 ▼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410 ▼aFederación Internacional de Asociaciones de Bibliotecarios y Bibliotecas
	110 ▼aG20
	410 ▼aGroup of 20
	110 ▼aILO
	410 ▼a國際勞動機構
	410 ▼a국제노동기구
	410 ▼a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아. 음악그룹

음악그룹¹⁹⁾은 이 지침에서 단체명으로 다룬다. 표목의 채택과 기

19) FRAD Entity Definitions

술은 ‘2.2 채택표목의 선정과 기술’의 ‘가~마’에 따라 선정하고 기술하며, 음악그룹의 멤버 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변경된 경우 연혁참조(665 ▼a) 필드²⁰⁾에 구성원의 변경사항을 기술하고 도보라 부출은 유지한다.

예)	110 ▼a소녀시대
	410 ▼a少女時代
	410 ▼aGirls' Generation
	410 ▼aSNSD
	410 ▼a소시
	5000 ▼wi▼i그룹멤버:▼a태연▼0KAC201708570
	5000 ▼wi▼i그룹멤버:▼a티파니▼0KAC201708777
	5001 ▼wi▼i그룹멤버:▼a서현▼0KAC201635827
	510 ▼wi▼i관련단체:▼a태티서▼0KAB201500138
	665 ▼a2007년 태연, 써니, 티파니, 효연, 유리, 수영, 윤아, 서현 멤버로 데뷔

자. 기타단체

기타 단체는 ‘2.2 채택표목의 선정과 기술’의 ‘가~마’에 따라 선정하고 기술한다.

예)	[정당]
	110 ▼a더불어민주당
	410 ▼aDemocratic Party
	410 ▼aDeobureominjudang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A Conceptual Model (amended 2013)]

- Person : Includes personas or identities established or adopted jointly by two or more individuals
(e.g. Ellery Queen: joint pseudonym of Frederic Dannay and Manfred B. Lee).
- Corporate Body : Includes musical performing groups, groups of visual artists, and dance companies producing collective work.

※ 단 이 지침에서는 채택표목 이름의 속성이 개인명 형식이 아닌 공동필명의 경우 단체명으로 기술한다.
(예) 햇살과나무꾼, 그림형제)

20) 개인명 전거가 생성된 구성원은 500(도보라 부출) 필드에 부출하며, 개인명 전거가 없는 구성원은 부출하지 않고 665(연혁참조) 필드에 기술한다.

- 110 ▼aDemocratic Party (미국)
- 410 ▼a민주당 (미국)

- 110 ▼a자유한국당.▼b미디어홍보단
- 410 ▼a자유한국당 미디어홍보단

- 110 ▼a정의당.▼b충남도당.▼b여성위원회
- 410 ▼a정의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종교단체]

- 110 ▼a대한불교조계종.▼b조계사
- 410 ▼a조계사

- 110 ▼a대한불교천태종.▼b관문사.▼b성보박물관
- 410 ▼a관문사 성보박물관 of Korea

- 110 ▼a명동대성당.▼b청년단체연합회
- 410 ▼a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 110 ▼a원불교.▼b교정원
- 410 ▼a원불교 교정원

[공공기관]

- 110 ▼a한국국제교류재단
- 410 ▼aKorea Foundation
- 410 ▼a코리아 파운데이션
- 410 ▼aKF

- 110 ▼a대외경제정책연구원
- 410 ▼a對外經濟政策研究院
- 410 ▼a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410 ▼aKIEP

[공기업]

- 110 ▼a한국도로공사
- 410 ▼a韓國道路公社
- 410 ▼aKorea Expressway Corporation
- 410 ▼aEX

- 110 ▼a교통안전공단.▼b자동차안전연구원
- 410 ▼a자동차안전연구원
- 110 ▼a한국자산관리공사
- 410 ▼a韓國資產管理公社
- 410 ▼a캠코
- 410 ▼aKAMCO
- 410 ▼a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위원회]

- 110 ▼a한국문화예술위원회
- 410 ▼a韓國文化藝術委員會
- 410 ▼aArts Council Korea
- 410 ▼a아르코
- 410 ▼aARKO

- 110 ▼a방송통신심의위원회

- 410 ▼a放送通信審議委員會
- 410 ▼a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110 ▼a유니세프한국위원회
- 410 ▼aUNICEF한국위원회
- 410 ▼aKorean Committee for UNICEF

[학회]

- 110 ▼a한국언론학회
- 410 ▼a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교육기관]

- 110 ▼a이화여자대학교
- 410 ▼aEwha Womans University

모든 정보원에서 흔히 발견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저작에 나타난 단체명을 그대로 채택표목으로 기술한다.

3. 단체명 참조표목

3.1 「~보라」 참조표목

채택표목에 선정되지 않은 이름 중 해당 단체와 관련된 저작 및 정보원에 기재되어 있거나 이용자가 검색을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단체명은 모두 기술한다.

채택표목에 선정되지 않은 단체의 공식 이름은 「~보라」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UNESCO
	410 ▼a유네스코
	410 ▼a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단체의 채택표목이 상위기관을 기본요소로 하고 원래 형식을 하위요소로 기술되었다면, 해당 단체명의 원래 형식²¹⁾을 기본요소로 한 참조표목을 기술한다.

예)	110 ▼a한국학중앙연구원.▼b장서각
	410 ▼a장서각

단체의 원래 형식이 채택표목의 기본요소로 기술되었고 해당 단체의 상위기관이 있는 경우, 상위기관을 기본요소로 하고 해당단체를 하위요소로 한 참조표목을 기술한다.

예)	110 ▼a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410 ▼a서울대학교병원.▼b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채택표목이 단체명의 머리글자나 축약형이라면 단체명의 완전형

21) 원래 형식이란 단체명이 관련된 정보원이나 참고 정보원에 상위단체를 포함하지 않고 해당단체명만으로 나타난 형식을 말함.

을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KOTRA
	410 ▼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채택표목이 단체명의 완전형이라면, 단체명의 머리글자나 축약형을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전국경제인연합회
	410 ▼a전경련

단체명의 축약형이 온점이 있는 머리글자와 온점이 없는 경우가 다르게 검색된다면, 채택표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각각의 형식을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10 ▼aUNESCO
	410 ▼aU.N.E.S.C.O.

그 외 채택표목에 선정되지 않은 이름으로, 단체와 관련된 저작이나 정보원에 나타난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3.2 「~도 보라」 참조표목

채택표목과 관련된 단체명 및 개인명은 「~도 보라」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046 ▼s1962▼t2009
	110 ▼a대한주택공사
	510 ▼wb▼a한국토지주택공사
	046 ▼s1996▼t2009
	110 ▼a한국토지공사
	510 ▼wb▼a한국토지주택공사

	046 ▼s2010
	110 ▼a한국토지주택공사
	510 ▼wnnnd▼a한국토지공사
	510 ▼wnnnd▼a대한주택공사
	665 ▼a2010년 9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
참고	▼wnnnd : 상호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5필드를 사용함 (ex. 단체의 합병 또는 분리 시)
	▼wa : 이전 표목
	▼wb : 이후 표목

예)	110 ▼a소녀시대
	410 ▼a少女時代
	410 ▼aGirls' Generation
	410 ▼aSNSD
	410 ▼a소시
	5000 ▼wi▼i그룹멤버:▼a태연▼OKAC201708570
	5000 ▼wi▼i그룹멤버:▼a티파니▼OKAC201708777
	5001 ▼wi▼i그룹멤버:▼a서현▼OKAC201635827
	510 ▼wi▼i관련단체:▼a태티서▼OKAB201500138
	665 ▼a2007년 태연, 써니, 티파니, 효연, 유리, 수영, 윤아, 서현 멤버로 데뷔

4. 단체의 속성

4.1. 원칙

단체의 속성에는 장소, 날짜, 단체와 관련된 기타 지시, 언어, 주소, 활동분야, 역사 등이 있다. 속성은 단체의 식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한다.

4.2. 단체와 관련된 날짜

단체와 관련된 날짜는 단체의 설립일, 종료일, 활동시기 등이며, 특정 단체를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와 구분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다.

설립일은 특정 단체를 설립한 날짜이며, 종료일은 단체가 활동을 그만두거나 해산한 날짜이다. 단체와 관련된 날짜는 'yyyy' 형식으로 기술하고, 설립월일 또는 종료월일까지 알 수 있는 경우 'yyyymm', 'yyyymmdd'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단체의 설립일자와 해체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단체의 활동시기를 나타내는 일자나 일자 범위를 기술할 수 있다.

단체의 설립일과 종료일이 확실하게 표기된 경우 특별한 연도 부호(046 ▼q, ▼r) 필드에 우선 기술한다. 설립일 또는 종료일로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이외의 활동시기는 특별한 연도 부호(046 ▼s, ▼t) 필드에 기술한다. 이 때 채택표목의 한정어로 '활동시기' 어구 다음에 시작시점(046 ▼s)과 종료시점(046 ▼t)의 값을 기재한다.

예)	046 ▼q1994
	110 ▼a유니세프한국위원회
	046 ▼q1945▼r1948

110	▼a조선도서관협회
046	▼q1955
046	▼s1963▼t1965
110	▼a민주당 (활동시기 : 1963-1965)

4.3. 단체의 유형

단체의 유형이란 단체가 법인임을 나타내거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나 어구 또는 특정 단체를 다른 단체나 개인 등과 구분해주는 용어이다. 단체의 유형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다.

단체의 유형은 개인/단체의 기타 속성(368 ▼a) 필드에 기술한다.

예)	110	▼a아름다운가게
	368	▼a비영리기관
	110	▼a소녀시대
	368	▼a음악그룹
	110	▼a환경운동연합
	368	▼a시민단체
	110	▼aIBM
	368	▼a일반기업체

4.4. 관련 장소

단체와 관련된 장소는 단체와 관련된 주요한 위치(예: 단체의 본사 소재지, 기타 관련 장소 등)를 가리키며, 특정 단체를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와 구분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다.

관련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지명)를 참고하여 기술

(▼2nlsh)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지역명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기술한다.

단체와 관련된 장소는 관련 장소-본사의 위치(370 ▼e) 필드에 기술하고, 장소와 관련된 낱자가 정보원에 있는 경우 낱자를 함께 기술한다.

예)	110	▼a시스템공학연구소
	370	▼e대전▼2nlsh
	110	▼a경희대학교.▼b산학캠퍼스
	370	▼e서울▼2nlsh
	110	▼aOCLC
	370	▼e미국▼2nlsh
	110	▼a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370	▼e서울▼s2006▼2nlsh

4.5. 단체의 주소

단체의 주소는 단체의 본사나 사무소의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나 웹사이트 주소이며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다.

단체의 주소 등은 주소(371) 필드에 기술한다.

예)	110	▼a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71	▼a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 주소
	110	▼a국립중앙도서관.▼b국가서지과
	371	▼mkormarc@nl.go.kr ← 전자우편 주소
	110	▼a김대중 도서관
	371	▼uhttp://www.kdjlibrary.org ← 인터넷 주소

4.6. 활동분야

단체의 활동분야란 해당 단체가 관여하는 사업 분야나 권한 및 책임 관할권을 가진 영역으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반드시 기술한다.

저작에 활동분야 정보가 없는 경우, 모든 정보원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하고 어떤 정보원에서도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의 주제를 고려하여 임의로 기술할 수 있다.

활동분야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분야)를 참고하여 기술(▼2nlsh)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분야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야명을 기술한다.

활동분야와 관련된 낱자가 정보원에 있을 경우 함께 기술하며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경우에는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단체의 활동분야는 활동분야(372 ▼a) 필드에 기술한다.

예)	110	▼aKOTRA
	372	▼a무역▼2nlsh
	110	▼a국제엠네스티
	372	▼a인권
	110	▼a아름다운 가게
	372	▼a공익사업
	110	▼a통일부.▼b통일교육원
	372	▼a통일교육▼s1972
	110	▼a통일부.▼b통일교육원
	372	▼a통일교육▼s1972
	110	▼a통일부.▼b통일교육원
	372	▼a통일교육▼s1972

4.7. 언어

단체의 언어는 단체가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다.

단체의 언어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언어)를 참고하여 기술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지 않은 언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언어명을 기술한다.

단체의 언어는 관련 언어(377 ▼1) 필드에 기술하고 주제명표목표를 사용한 경우 377(▼2n1sh) 필드를 추가한다. 하나 이상의 단체의 관련 언어는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하되, 주제명표목표를 사용한 언어와 사용하지 않은 언어를 구분하여 377 필드를 반복 사용한다.

예)	110 ▼aKT&G
	377 ▼1한국어▼2n1sh
	
	110 ▼aIFLA
	377 ▼1영어▼1스페인어▼1독일어▼1프랑스어▼1중국어 ▼1아랍어▼1러시아어▼2n1sh
	377 ▼1월로프어▼1밤바라어

4.8. 단체의 역사

단체의 역사란 단체명의 변경 연혁, 단체의 연혁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단체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하여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에 단체의 역사를 기술하는 요소에 단체의 다른 속성 정보를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단체명의 변경 연혁은 665(연혁 참조) 필드에 기술하고, 단체명의 역사적 또는 전기적 정보는 678(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필드에 기술한다.

예)	110 ▼a한국.▼b문화체육관광부
----	--------------------

665 ▼a1989년 12월 30일 문화부 설치,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로 개칭,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개칭,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

※ 단체명의 변경 연혁 기술

110 ▼a아름다운재단

678 ▼a대한민국의 재단법인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본부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다. 변호사 박원순이 중심이 되어 2000년 8월에 창립된 후 2000년 '아름답게 돈쓰기 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2002년 송진우기금 조성, 2003년 아름다운기금을 조성하여 '희망가게' 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부문화와 나눔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 단체의 역사를 다른 속성 정보와 함께 기술

5. 정보원의 기술

정보원은 단체명 선거데이터 기술의 인용정보 출처로서 관련 저작, 기타정보원, 단체의 공식 웹사이트 등이 해당된다. 채택표목이나 참조표목, 단체의 속성을 기술하는데 출처가 된 정보원은 모두 기술한다.

정보원의 출처는 정보원(670 ▼a) 필드에 입력하고 URL, URN과 같은 URI는 정보원(670 ▼u) 필드에 기술한다.

예)	110	▼a한국국제협력단
	410	▼a코이카
	410	▼aKOICA
	410	▼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670	▼a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한울), 2012
	670	▼aSearching for effective measure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KOICA), 2007
	670	▼aKOICA▼uhttp://www.koica.go.kr

6. 부록 - 선거데이터 예시

6.1. 정부기관 예시

	046	▼s2008
예)	110	▼a한국.▼b문화체육관광부
	368	▼a정부기관
	370	▼e세종▼2nlsh
	371	▼a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71	▼uhttp://www.mcst.go.kr
	372	▼a관광▼a예술▼2nlsh
	410	▼a문화체육관광부
	410	▼a대한민국.▼b문화체육관광부
	410	▼a文化體育觀光部
	410	▼a韓國.▼b文化體育觀光部
	410	▼a大韓民國.▼b文化體育觀光部
	410	▼a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410	▼aKorea.▼b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410	▼aRepublic of Korea.▼b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hh
	410	▼aDaehanminguk.▼bMunhwacheyukgwangwangbu
	510	▼wa▼a문화공보부
	510	▼wa▼a문화부
	510	▼wa▼a문화체육부
	510	▼wa▼a문화관광부
	665	▼a1989년 12월 30일 문화부 설치,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로 개칭,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개칭,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

	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
670	▼a우리의 전통축제, 100배 즐기기, (문화체육관광부), 2012
670	▼aWIKI▼uhttp://ko.wikipedia.org

예)	046	▼q1963
	110	▼a국립중앙도서관
	368	▼a국립도서관
	370	▼e서울▼2nlsh
	371	▼a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371	▼uhttp://www.nl.go.kr
	372	▼a문헌정보학▼s1945▼2nlsh
	410	▼a한국.▼b문화체육관광부.▼b국립중앙도서관
	410	▼a대한민국.▼b문화체육관광부.▼b국립중앙도서관
	410	▼aNational Library of Korea
	410	▼aKorea.▼b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bNational Library of Korea
	410	▼aRepublic of Korea.▼b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bNational Library of Korea
	410	▼a國立中央圖書館
	410	▼a韓國.▼b文化體育觀光部.▼b國立中央圖書館
	410	▼a大韓民國.▼b文化體育觀光部.▼b國立中央圖書館
	510	▼wa▼a국립도서관
	665	▼a1963년 10월 28일 「국립도서관」에서 명칭 변경
	670	▼a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국립중앙도서관), 2006
678	▼a대한민국 국가 대표 도서관	

예)	110	▼a부산광역시
	370	▼c부산▼2nlsh
	371	▼uhttp://www.busan.go.kr

410	▼a부산시
410	▼a부산
410	▼a부산광역시청
410	▼a釜山
410	▼a釜山廣域市
410	▼aBusan
410	▼aPusan
410	▼aPusan-si
410	▼aBusan Metropolitan City
670	▼a http://ko.wikipedia.org
678	▼a대한민국 동남부 해안에 있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이자 최대 항구도시

6.2. 국제단체 예시

예)	046	▼q1945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110	▼aUNESCO	
	368	▼a국제기구	
	370	▼e프랑스▼2nlsh	
	371	▼u http://en.unesco.org	
	372	▼a교육문화	
	410	▼aUnesco	
	410	▼a유네스코	
	410	▼aU.N.E.S.C.O.	
	410	▼a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410	▼a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e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410	▼a聯合國教育科學及文化組織	
	410	▼a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410	▼a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	

670	▼aWIKI▼uhttp://ko.wikipedia.org
670	▼a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문화체육관광부), 2010
678	▼a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 빈곤의 근절,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교육을 통한 상호대화, 과학문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에 중점을 두는 국제연합기구

예)

110	▼aOECD
368	▼a국제기구
370	▼e프랑스▼2nlsh
371	▼uhttp://www.oecd.org
372	▼a경제협력
377	▼a영어▼a프랑스어▼2nlsh
410	▼a경제협력개발기구
410	▼a經濟協力開發機構
410	▼a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410	▼aOCDE
410	▼a
670	▼a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
670	▼aOECD 중기농업전망, (FAO한국협회), 1996

6.3. 기타단체 예시

예)

046	▼s2005
110	▼a한국학중앙연구원.▼b장서각
368	▼a한국학 전문 도서관
371	▼a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uhttp://www.aks.ac.kr
372	▼a한국학

410	▼a장서각
410	▼a韓國學中央研究院.▼b藏書閣
410	▼aAcademy of Korean Studies.▼bJangseogak
510	▼wa▼a한국정신문화연구원.▼b장서각
670	▼a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예)

046	▼q1995
110	▼aKOTRA
368	▼a준정부기관
370	▼e서울▼2nlsh
371	▼a서울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uhttp://www.kotra.or.kr
372	▼a무역진흥
410	▼aKotra
410	▼akotra
410	▼a코트라
410	▼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10	▼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0	▼a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510	▼wa▼a대한무역진흥공사
670	▼a세계를 향한 KOTRA 50, (KOTRA), 2012
670	▼a중남미 플랜트기계류 수출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2
678	▼a한국 정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한국지명】

서울	가평	서산	강진	사천
부산	양평	논산	해남	김해
대구	강원도	금산	영암	밀양
인천	춘천	부여	무안	거제
광주(광역시)	원주	서천	함평	양산
대전	강릉	청양	영광	의령
울산	동해	홍성	장성	함안
세종	태백	예산	완도	창녕
경기도	속초	태안	진도	고성(경상남도)
수원	삼척	당진	신안	남해
성남	홍천	전라북도	경상북도	하동
의정부	횡성	전주	포항	산청
안양	영월	군산	경주	함양
부천	평창	익산	김천	거창
광명	정선	정읍	안동	합천
평택	철원	남원	구미	제주도
동두천	화천	김제	영주	제주
안산	양구	완주	영천	서귀포
고양	인제	진안	상주	(북한지명)
과천	고성(강원도)	무주	문경	평양
구리	양양	창수	경산	나선
남양주	충청북도	임실	군위	남포
오산	청주	순창	의성	신의주
시흥	충주	고창	청송	금강산
군포	제천	부안	영양	개성
의왕	청원	전라남도	영덕	함경남도
하남	보은	목포	청도	함경북도
용인	옥천	여수	고령	평안남도
파주	영동	순천	성주	평안북도
이천	진천	나주	칠곡	황해남도
안성	괴산	광양	예천	황해북도
김포	음성	담양	봉화	자강도
양주	단양	곡성	울진	양강도
여주	충청남도	구례	울릉	
화성	천안	고흥	경상남도	
광주(경기도)	공주	보성	창원	
연천	보령	화순	진주	
포천	아산	장흥	통영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외국지명】

가	루마니아	벨라루스	시에라리온	인도	키프로스
가나	룩셈부르크	벨리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
가봉	르완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	일본	타지키스탄
가이아니	리비아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자	탄자니아
감비아	리투아니아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자메이카	태국
과테말라	리히텐슈타인	부룬디	아르헨티나	잠비아	터키
그레나다	마	부르키나파소	아이슬란드	적도 기니	토고
그리스	마다가스카르	부탄	아이티	조지아	통가
기니	마셜제도	북키프로스	아일랜드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기니비사우	마케도니아	북한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
나	말라위	불가리아	아카도르	중화민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나미비아	말리	브루나이	안도라	짐바브웨	파
나우루	멕시코	사	알바니아	차	파나마
나이지리아	모나코	사모아	알제리	차드	파라과이
남수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압하지야	체코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모리셔스	산마리노	앙골라	칠레	파푸아뉴기니
남오세티야	모리타니	상투메 프린시페	앤티가 바부다	카	팔라우
네덜란드	모잠비크	서사하라	에리트레아	카메룬	팔레스타인
네팔	몬테네그로	세네갈	에스토니아	카보베르데	페루
노르웨이	몰도바	세르비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포르투갈
뉴질랜드	몰디브	세이셸	엘살바도르	카타르	폴란드
니우에	몰타	세인트루시아	영국	캄보디아	프랑스
니제르	몽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예멘	캐나다	피지
니카라과	미국	세인트키츠 네비스	오만	케냐	핀란드
다	미얀마	소말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코모로	필리핀
덴마크	미크로네시아	소말린란드	오스트리아	코소보 공화국	하
도미니카 공화국	바	솔로몬 제도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한국
도미니카 연방	바누아투	수단	요르단	코트디부아르	헝가리
독일	바레인	수리남	우간다	콜롬비아	홍콩
동티모르	바베이도스	스리랑카	우루과이	콩고 공화국	
라	바티칸	스와질란드	우즈베키스탄	콩고 민주 공화국	
레소토	벨기에	시리아	이탈리아	키리바시	
라오스	바하마	스웨덴	우크라이나	쿠바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스위스	이라크	쿠웨이트	
라트비아	베냉	스페인	이란	쿡 제도	
러시아	베네수엘라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레바논	베트남	슬로베니아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분야】

※하단의 분류기호는 목록 작성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

001	인문학	189	심리치료	327	금융
001	사전학	190	윤리	328	보험
004	정보통신	200	종교	329	세무
004	컴퓨터	201	종교학	330	사회학
004	IT	219	신화	331	다문화
005	프로그래밍	220	불교	337	여성학
005	데이터베이스	229	라마교	338	사회복지
010	서지학	230	기독교	339	사회단체
011	저작권	230	가톨릭교	340	정치
012	고문서	239	유대교	349	외교
013	출판	240	도교	350	행정
020	문헌정보학	250	천도교	360	법학
069	박물관학	258	동학	361	국제법
070	신문방송	259	단군교	362	헌법
100	철학	259	대종교	363	행정법
140	경학	270	힌두교	364	형법
150	동양철학	270	브라마교	365	민법
151	한국철학	279	자이나교	366	상법
152	중국철학	280	이슬람교	367	소송법
153	일본철학	289	조로아스터교	368	노동법
154	동남아시아철학	300	사회과학	370	교육
155	인도철학	301	사회사상	373	교육방법
156	중앙아시아철학	309	사회문화	374	국어교육
157	시베리아철학	310	사회통계	374	영어교육
158	서남아시아철학	320	경제	374	수학교육
159	아라비아반도철학	321	부동산	374	과학교육
160	서양철학	321	노동경제	374	음악교육
162	미국철학	321	자원경제	374	미술교육
163	북구철학	323	산업경제	374	진로교육
164	영국철학	323	지역경제	375	유아교육
165	독일철학	325	경영학	375	초등교육
165	오스트리아철학	325	광고	376	중등교육
166	프랑스철학	325	재무	377	대학교육
166	네덜란드철학	325	노무	377	전문교육
167	스페인철학	325	회계	377	고등교육
168	이탈리아철학	325	마케팅	377	직업교육
169	러시아철학	326	상업	378	평생교육
170	논리학	326	무역	378	부모교육
180	심리학	326	교통	379	장애인교육
186	심리상담	326	통신	379	영재교육
187	초심리학	326	방송	379	특수교육
188	운명학	326	관광	379	다문화교육
189	명상	326	IT산업	380	민속학

380	문화인류학	512	민간의학	539	도시공학
380	문화재	512	간호학	539	환경공학
390	국방	512	물리치료	539	소방학
390	군사	512	방사선과	540	건축
400	과학/자연과학	512	작업치료학	544	친환경건축
409	과학사	512	가정의학	548	인테리어
410	수학	512	응급의학	550	기계공학
413	통계학	513	내과	553	열역학
414	해석학	513	정신의학	554	유체역학
415	기하학	513	피부과	554	공기역학
420	물리	513	비뇨기과	554	진공학
424	음향	514	외과	555	안경공학
425	광학	514	정형외과	556	자동차공학
428	자기	514	신경외과	558	우주항공
430	화학	514	흉부외과	559	광산
440	천문학	514	성형외과	559	금속
446	측지학	514	마취과	559	원자력
450	지구과학	514	재활의학	559	조선
452	지형학	515	치과	560	전기공학
453	기상	515	이비인후과	561	계측공학
453	기후	515	안과	561	재료공학
454	대기	516	산부인과	563	에너지공학
455	지질	516	소아과	567	통신공학
456	지사학	516	노인의학	568	무선공학
457	고생물	517	건강	569	전자공학
458	광상학	517	예방의학	570	화학공학
459	암석학	518	약학	571	공업화학약품
460	광물학	519	한의학	572	연료공업
469	결정학	520	농업	573	음료기술
470	생명과학	522	농업경제학	574	식품공학
471	인류학	524	작물	575	유지공업
472	생물	525	원예	575	석유공업
472	생화학	525	조경	575	가스공업
474	세포학	526	임업	576	유리공업
475	미생물학	527	축산	577	염색학
477	생물지리학	528	수의학	577	도장공학
480	식물학	529	수산업	578	고분자화학공업
490	동물학	530	공학	579	유기화학공업
500	기술과학	531	토목	580	제조업
510	의학	533	측량	581	금속제조
511	기초의학	534	도로	582	철강
511	해부학	534	교통	584	목공업
511	생리학	535	철도	585	모피공업
511	병리학	536	교량	586	종이공업
511	면역학	537	수리공학	587	섬유공업
511	기생충학	538	항만	588	의류제조
512	임상의학	539	산업공학	590	생활과학

591	가정생활	727	번역(중국어)	900	고고학
592	패션	730	일본어	909	세계사
593	미용	730	일어일문학	909	역사
594	요리	730	아시아어	911	한국사
594	식품영양학	737	번역(일본어)	912	중국사
595	주택관리	740	영어	913	일본사
595	인테리어	740	영어영문학	914	동남아시아사
597	청소	747	번역(영어)	915	인디언사
598	육아	750	독일어	920	서양사
600	예술	750	독어독문학	920	유럽사
601	미술	757	번역(독일어)	921	그리스사
609	미술사	760	프랑스어	922	로마사
620	조소	760	불어불문학	924	영국사
630	공예	767	번역(프랑스어)	925	독일사
640	서예	770	스페인어	926	프랑스사
650	회화	777	번역(스페인어)	927	스페인사
650	디자인	779	포르투갈어	928	이탈리아사
657	만화	780	이탈리아어	929	러시아사
659	판화	787	번역(이탈리아어)	930	아프리카사
660	사진	789	루마니아어	940	북아메리카사
670	음악	792	인도어	941	캐나다사
679	국악	792	러시아어	942	미국사
680	공연예술	793	아프리카어	943	멕시코사
684	연극	794	인디언어	944	중앙아메리카사
685	무용	800	문학	950	남아메리카사
685	발레	800	아동문학	980	지리
687	방송연예	800	고전문학	980	여행
688	영화	809	문학평론	989	지도
690	레크리에이션	810	한국문학	990	전기
690	게임	810	한문학	999	족보
692	스포츠	811	한국시		
693	체조	812	한국희곡		
694	육상	813	한국소설		
695	구기	814	한국수필		
696	수상경기	820	중국문학		
696	공중경기	830	일본문학		
698	무예	840	영미문학		
699	레저스포츠	850	독일문학		
700	언어학	860	프랑스문학		
700	번역	870	스페인문학		
700	통역	870	포르투갈문학		
710	한국어	880	이탈리아문학		
710	국어국문학	889	루마니아문학		
710	한문	892	인도문학		
717	번역(한국어)	892	러시아문학		
720	중국어	893	아프리카문학		
720	중어중문학	900	역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언어】

가어	로로어	벵골어	아라비아어
간다어	로망스어	보트어	아라와크어
갈라어	루마니아어	보프리어	아라우칸어
게르만어	루바어	북미 인디언어	아라파호어
게일어,스코트	루이새노어	북부소토어	아람어
고트어	룬디어	불가리아어	아르메니아어
곤드어	리투아니아어	브라이어	아바르어
과라니어	마가히어	브르타뉴어	아베스타어
교회슬라브어	마노버어	블랙푸트어	아셈어
구자라트어	마라타어	사마리아아람어	아와디어
그루지야어	마르와르어	사포텍어	아이마라어
그리스어	마사이어	산고어	아이슬란드어
나바호어	마야어	산다웨어	아일랜드어
나와어	마오리어	산스크리트어	아제르바이잔어
남미 인디언어	마이틸리어	살리시어	아카드어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어	마케도니아어	샤이엔어	아콜리어
남부 소토어	만데어	샨어	아타파스카어
남웨즈어	말라가시어	세레르어	아파치어
난자어	말라얄람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아프리카ンス어
네덜란드어	말레이 폴리네시아어	셀크업어	아프리힐리어
네와르어	말레이어	셈어	알곤킨어
네팔어	맹크스어	소그드어	알류트어
노로어	머스코기어	소말리어	알바니아어
노르웨이어	멘데어	스페인어	알자미아어
누비아어	모시어	슬라브어	암하라어
니제르 콩고어	베자어	슬로바키아어	앵글로색슨어
다코타어	베트남어	시다모어	야오어,반투어
랑그도크어	벨라쿨라어	시리아어	에스키모어
러시아어	벰바어	신드어	에스토니아어

에스페란토	이로쿼이어	카시어	태국어	하이다어
에티오피아어	이집트어	카자흐어	터키어	한국어
에피크어	이태리어	카친어	테레노어	함셈어
엘람어	인도네시아어	카탈로니아어	텔루구어	헝가리어
영어	인도어	캄바어	템네어	헤레로어
예웨어	인도유럽어	캄보디아어	투르크멘어	호사어
오논다가어	일로카노어	캐시므르어	튀르크어	후피어
오리아어	일본어	케추아어	트위어	히마찰어
오세이지어	자바어	켈치어	틀링기트어	히브리어
오세트어	제나가어	켈트어, 켈트어족	티그레어	힌두어
오스만 터키어	주니어	코카시아어	티그리니아어	
오지브와어	줄루어	코탄어	티베트어	
오토미어	중국어	콘월어	파슈토어	
오톰어	중미인디언어	콥트어	파푸아 호주어	
와쇼어	지나티베트어	콩고어	판어	
와카시어	집시어	콩카니어	팔라비어	
왈라모어	체로키어	쿠르드어	팔리어	
요루바어	체첸어	쿠르크어	편잡어	
우가리크어	체코어	쿠테네이어	페로어	
우루드어	측토어	크루어	페르시아어	
우즈베크어	추바슈어	크리어	포르투갈어	
우크라이나어	츠와나어	크리올어피진어	폰어	
움분드어	치누크방언	크펠르어	폴란드어	
월로프어	치브차어	키르기즈어	프라크리트어	
웨일스어	침산어	키쿠유어	프랑스어	
웬드어	카너더어	킨야완더어	프로방스어	
위그루어	카누리어	타갈로그어	프리지어어	
유태아랍어	카도어	타밀어	피노우그리아어	
유태페르시아어	카라칼파크어	타이어	핀란드어	
이디시어	카렌어	타지크어	하와이어	
이란어	카리브어	타타르어	하우사어	